

#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양축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

## 1 퇴비·액비화 기준 (관련법령 :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)

### ● 퇴비화기준

종류	항목	기준	시행일
모든 가축	부속도	1,500㎡ 이상 / 부속후기 또는 부속완료	20. 3. 25
	함수율	1,500㎡ 미만 / 부속중기 70% 이하	
돼지	구리	500mg/kg 이하	15. 3. 25
	아연	1,200mg/kg 이하	
소·젖소	염분	2.5% 이하	

### ● 액비화기준

종류	항목	기준	시행일
돼지	부속도	부속완료	허가: 17. 3. 25 신고: 19. 3. 25
	함수율	돼지 95% 이상, 젖소 93% 이상	
젖소	구리	70mg / kg 이하	15. 3. 25
	아연	170mg / kg 이하	
	염분	2.0% 이하	

※ 부속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.

1. 퇴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 : 2020년 3월 25일

2. 액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

가.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,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: 2017년 3월 25일

나.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: 2019년 3월 25일

### ● 퇴비·액비 자가처리농가 - 퇴비·액비의 성분 분석 의무화

-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,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

\* 벌칙조항 (가축분뇨법 제53조 제2항1호)

- 허가대상 퇴비·액비기준 초과에 따른 1차부터 3차까지 위반

\* 과태료 : 100~1,000만원까지, 부속도 : 100~200만원

- 신고대상 퇴비·액비기준 초과에 따른 1차부터 3차까지 위반

\* 과태료 : 50~500만원까지, 부속도 : 50~100만원

### ● 비료생산업 등록 (가축분뇨발효액) 액비의 살포기준 완화

- 「비료관리법」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 **초지나 농경지 확보예외 적용** 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 27조)

### ● 장부관리 (가축분뇨법 제39조)

-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

\* 벌칙조항 (가축분뇨법 제53조 제3항16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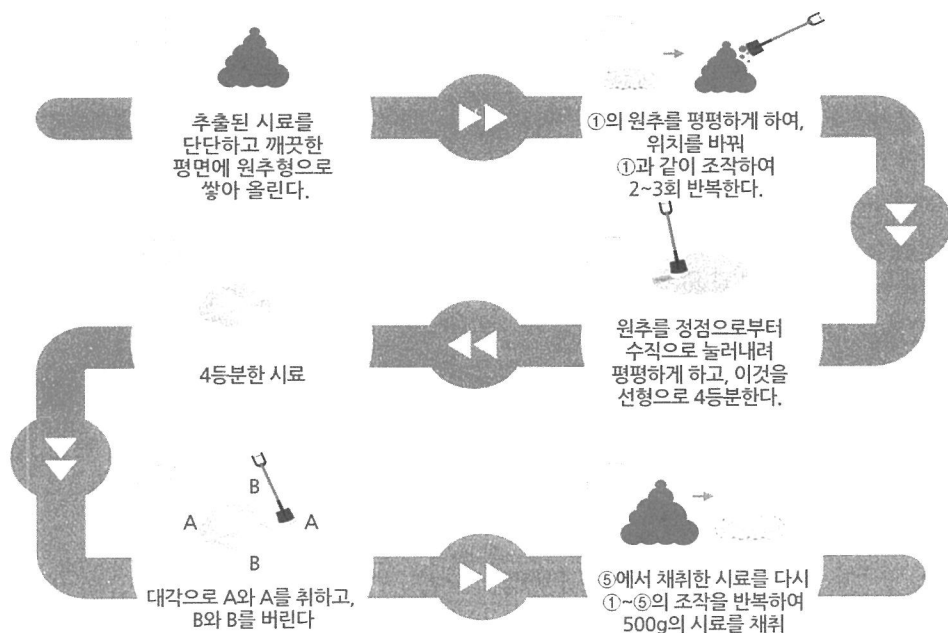
-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차부터 3차까지 위반

\* 과태료 : 50만원, 70만원, 100만원



##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방법

- 퇴비를 채취하는 경우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의 채취방법으로 500g을 채취



- 액비를 채취하는 경우 2~3회 교반 후 충분히 혼합된 상태에서 채취하여 전체 분석대상 분료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※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ml 이상의 유리용기, 플라스틱 용기, 무균 채수용기 사용하며 채우기 전 시료로 3회 이상 세척 후 시료가 용기에 딱 차지 않도록 채취
- 시료운송방법 및 시료검사기관 안내
  -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시료를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운송하며, 이때 채취 날짜, 시료명, 주소, 시료내역 등을 기재
    - ※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하고, 온도,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
    - ※ 여름철에는 시료의 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7월~8월 중에는 시료분석을 피하고, 불가피한 경우 온도가 20℃ 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
  -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
    - ※ 농사로(www.nangsaro.go.kr) - 농자재 - 비료 - 시험연구기관 - 지정현황에서 업데이트 된 최신 시험연구기관 목록 열람 가능

